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71

발의연월일: 2021. 2. 2.

발 의 자:허 영·이규민·전재수

노웅래 · 김윤덕 · 김민기

박상혁 · 소병훈 · 조응천

위성곤 · 천준호 · 강준현

홍기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있었던 화물열차 탈선에 따른 화재사고(2 020년)와 같이 철도를 이용한 위험물 운송 관련 사고는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 운송 관련 산업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시사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는 운송 중의 위험 방지 및 인명 보호를 위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포장·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이 세부 기준인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서는 위험물의 포장 기준에 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 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 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위험물 운송 관리의 체계성과 실효성 확 보가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관련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위험물의 철도 운송에 따른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운송"을 "운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등과 이를 운송하기 위하여 포장·적재·저장·운반 ·관리 등을 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로, "운송 중"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포장·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를 "이를 운송·포장·적재·저장·운반·관리 등 (이하 "위험물취급"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① 위험물을 안전하게 담아 철도차량에 싣거나 부속하여 운반할 수 있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의 합격기준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이하 "포장·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포장·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장·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항의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포장·용기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
- 4. 제5항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⑦ 제6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①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한 경우
- 3.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73조제1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의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7의3.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자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이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률 제17746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8의3.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제82조제2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7의2.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방법, 절차 등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 7의3.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7의4.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위험물취급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44조(위험물의 <u>운송</u>) ① <u>대통령</u> 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철도 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운송</u> 중의 위험 방지 및 인명(人命) 보호를 위하여 안전 하게 <u>포장·적재하고 운송하여</u> <u>약 한다</u>.

제44조(위험물의 <u>운송 등</u>)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등과이를 운송하기 위하여 포장· 적재·저장·운반·관리 등을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한다)-----

-----<u>「철도산업발전</u>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를 운송·포장·적재·저장·운 반·관리 등(이하 "위험물취급" 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① 위험물을 안전하게 담아 철도차량에 신거나부속하여 운반할 수 있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② (생략)

<u><신 설></u>

-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포장 및 용기의 안전 성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의 합격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 기관(이하 "포장·용기검사기 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 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포장·용기 검사기관의 지 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

<u>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u> <u>정한다.</u>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장·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용기검사기관

 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항의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포장·용기검사기관이 제2항 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조작한 경우
- 4. 제5항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 <u>니하게 된 경우</u>
- ⑦ 제6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u><신 설></u>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①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내용·방법 등 위험물취급안 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위험물취급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한 경우
- 3.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 저 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 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관계

제73조(보고	및	검사)	1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 출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 설>

<신 설>

8. ~ 10. (생략)

② ~ ④ (생 략)

일부개정법률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신 설>

<신 설>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Τ									Τ		Τ	Τ		Τ		Τ	Τ				
																											_	
																											_	

- 1. ~ 7. (현행과 같음)
- 7의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의 포장 및 용기의 안 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7의3.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자의 위험물취급 안전교육 이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8. ~ 10.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46호 철도안전법 법률 제177746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세75조(청문)	 	

- 1. ~ 8. (현행과 같음)
- 8의2.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 · 용기 검사기관 의 지정 취소
- 8의3.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9. ~ 11. (생 략)

제8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8. ~ 12. (생략)

③ ~ ⑥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8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 물취급의 방법, 절차 등을 따 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7의3.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4.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 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 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위험물취급자

8. ~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